

의안번호	제2376호
의결 년 월 일	2025. . .

의결사항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출년월일	2025. 10. 28.

기획감사실 심사필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2376호
------------	--------

제출년월일 : 2025. 10. 28.

제 출 자 : 보 은 군 수

(소관부서 : 경제정책실)

1. 제안이유

- 남부3군 기업지원 및 신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4차년도(2026년)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보은군의회회의결을 얻고자 함

※ 행안부 유권해석(2015.8.26.)에 따라 출자출연 시 매년 사전 의결 필요

2. 주요내용

가. 동의안명: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

나. 법적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법적 근거
 -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추진 필요성: 충청북도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금(2023년~2027년)을 지원하여 산업혁신·신산업 발굴 등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 및 산학연 연계협력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다.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개요

- 운영시기: 2026. 1. ~ 2026. 12.
- 설립형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산하조직
- 센터규모: 1센터 3팀(경영기획지원팀·기업지원팀·산학협력지원팀) / 12명
- 참여기관
 - 충청북도 5대 혁신기관: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연구원,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남부권 대학 산학협력단: 충북도립대, 유원대
- 재원분담

(단위 : 백만원)

계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교부받는 기관
500 (100%)	200 (40%)	100 (20%)	100 (20%)	100 (20%)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라. 4차년도(2026년) 출자계획

- 출자금액: 1억원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연도별 군비 출연 계획

(단위 : 억원)

출자금액	연도별 출자금액					비고
	'23	'24	'25	'26	'27	
5	1	1	1	1	1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4. 참고자료

- 기관별 주요업무

기관명	주요업무
충북테크노파크	▶ 지역산업 기술육성 등 기술혁신 고도화, 국책사업 기획 등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4차산업혁명 대응, ICT융합산업, 연구개발 지원, 남부권 혁신자원 데이터 구축
충북연구원	▶ 산업구조 및 육성정책 수립 등
충북기업진흥원	▶ 육성자금, 기업애로 등 중소기업 성장지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창업지원 지원
대학 산학협력단 (도립대, 유원대)	▶ 산학연구소 중심 신사업 발굴 및 확산

○ 기관별 역할

기관명		역 할
충청북도		▶ 센터 설립 제반사항 점검 및 총괄(실무추진단 운영 등) ▶ 파견직원 선발(5급 1명) ▶ 남부권 대학(도립대, 유원대) 파견 협의(대학별 1명) ▶ 혁신기관 지원예산 확보 : 200백만원
남부 3 군	보은군	▶ 혁신기관 지원예산 확보 : 100백만원
	옥천군	▶ 혁신기관 지원예산 확보 : 100백만원
	영동군	▶ 혁신기관 지원예산 확보 : 100백만원
혁 신 기 관	과학기술혁신원	▶ 센터장 및 직원 채용(4명) ▶ 관련규정(정관, 직제 및 정원규정 등) 정비, 센터 운영규정 마련 ▶ 기타 필요 사전절차 이행(정원증원, '23 세입·세출예산 반영 등)
	충북테크노파크, 연구원, 기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 인력지원(5명) ※테크노파크 2, 연구원 1, 기업진흥원 1, 창조경제혁신센터 1 ▶ 기타 필요 사전절차 이행(정원증원, '23 세입·세출예산 반영 등)
남부권 대학		▶ 도립대 및 유원대 산학협력단 인력지원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와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2. 국가의 출연 또는 지원금

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학,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의 차입금 및 수익금

【참고사항】 행안부 회신자료(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제목 출자 또는 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질문

우리는 매년 출자 또는 출연이 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의회에서 별도 사전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안 심의로 같음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안 심의전에 별도로 사전 심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견 1. 신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만 사전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반복될 경우 예산안 심의로 같음한다.

의견 2. 출자출연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때만 사전승인을 받고, 변동이 없을 경우 예산심의로 같음한다.

의견 3. 모든 출자출연 발생시 예산심의회와 별개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답변 2015.08.26 11:34:24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의결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별도의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나 조례제정 과정과는 별개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등 항의 규정은 신규 출자출연기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출자출연에 대해 매년 사전의결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의결을 받아야 하는 출연금의 금액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본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관부처 재정정책과 이해성, 02-2100-3520